

재해예방을 위한 건설업 종사자간의 역할 강화에 관한 연구

김영숙 · 장성록 · 이종빈

부경대학교 안전공학부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국제노동기구 (ILO)보고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에 하루 평균 6,000명 15초당 1명꼴로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해마다 225만 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다. 또한 노동부가 발표한 2004년 산업재해발생 현황을 보면 국내에서도 재해로 인해 매일 8명의 근로자가 사망했으며 경제적 손실액은 12조 4천9억이란 천문학적인 수치로 정부예산의 10% 정도에 이르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¹⁾ 특히 최근 5년간('99~'03년) 발생한 전체 재해 중 사망 재해율이 가장 높은 것은 건설업으로 22%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²⁾ 이는 건설업 특성상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성 때문이며 재해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이 요구 되고 있다. 따라서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적 측면에서 기존의 방식을 고찰하고 반성할 필요성을 느낀다. 우리나라의 안전보건을 위한 현행법에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근로자 무과실 원칙'을 적용하고 사업장의 안전시설 및 관리적 사항에 대한 규제로 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강력한 법과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재해는 어떤 측면으로도 감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업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사업주 과실 책임'이 재해 예방의 최선책이 아니라는 결과로 생산 활동에 참가하는 근로자도 안전행동에 대한 최소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책임 있게 참여하고 준수하는 종사자 전원의 균형 있는 역할 수행이 요구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재해발생시 사업주 및 근로자의 과실 부분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 하고 재해처리 과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중대재해 사례 중 지난 3년간 (2002~2004) 발생된 574건의 재해를 발생 원인별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사업주, 근로자의 역할 범위를 파악하였다.³⁾ 현재까지 적용된 근로자 과실에 의한 재해처리 방법 및 '근로자 무과실' 원칙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해처리 방안에 대해 고찰하며 건설현장 소장 및 안전관리 전문가, 근로자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조사 방법으로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 및 분석 하였다.

2. 건설업 중대재해 현황 및 발생요인별 분석

2. 1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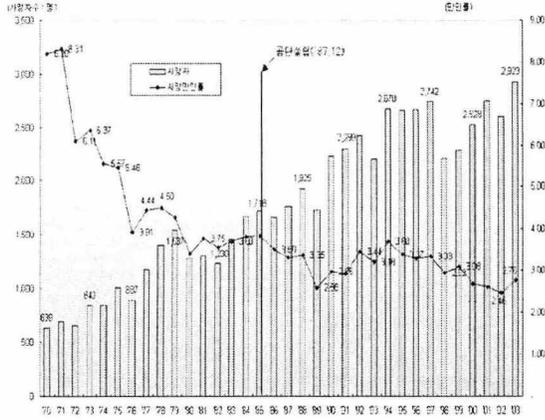


Fig. 1. 사망재해 발생비율

국내의 건설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재해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Fig.1 에서와 같이 중대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⁴⁾ 중대재해 증가 원인은 건설현장의 환경변화들을 수 있는데 이는 건설공사의 대형화, 고층화, 기계화 등에 따른 위험성 증대로 발생빈도에 비해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⁵⁾

2. 2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 요인별 분석

지난 3년(2002~2004)간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중대재해사태 574건을 인적, 물적, 관리적 원인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Table 1. 3년간 발생한 중대재해 요인별 분석(건설업)

	2002년	2003년	2004년	비율(%)
인적 원인	65	93	36	33.8
물적 원인	41	75	38	26.8
관리적원인	66	109	39	37.3
기 타	1	8	3	2.1

Table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재해 중 관리적인 원인이 214건으로 전체 재해 발생비 37.3%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으며 인적원인은 33.8%, 물적원인 26.8%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원인별 분석방법으로는 먼저 보호구 미착용 및 안전수칙 미 준수 등 의도적인 규정위반 등을 인적원인으로 분류하였고, 관리적으로는 보호구 및 안전장구 미지급 또는 안전 작업 계획 미비, 안전점검 미실시 등을 관리적 원인으로 분류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방호조치 미실시, 안전시설 미설치 경우 등을 물적 원인으로 분류 하였다. 교통사고나 부실시공에 의한 원인은 기타 사항으로 분류하였다. 기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해의 인적원인은 전체 재해 발생비의 33.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재해를 당하는 피해자 자신인 근로자들의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하다고 느끼고 실제 건설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설문조사 및 분석

3. 1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공단 574건의 재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불안정한 행동을 유발하는 인적원인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안전관리 시스템으로는 인적원인은 관리적, 시설적 원인으로 통합하여 관리되어 왔고 그 결과 재해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인적원인 제어를 위해서 보다 더 능동적인 방법이나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건설현장에서 직접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안전관계자 및 소장을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을 실시하였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산·경남 지역의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총 1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79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를 대상별로 분류한 결과 근로자가 가장 많은 전체(79부)의 44.3%를 차지하였고, 안전관계자는 39.2%, 소장은 16.5%의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설문내용은 3가지로 분류하여 실시하였으며 첫번째로 건설현장 종사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고 근로자 과실여부에 대해서 설문을 했으며 두번째 설문내용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주,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제도'에 관한 실효성을 분석하기 위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마지막 세번째로는 '근로자 무과실원칙'에 따라 재해 발생시 근로자 사업주 각각의 모호한 책임한계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근로자 사업주 모두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과실 인정제 도입'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Table 2. 설문대상 및 설문 회수율

설문대상	설문회수율	배포수	회수율
근로자	35(44.3%)	100	79
안전관계자	31(39.2%)		
소장	13(16.5%)		

3. 2 설문분석

3. 2. 1 목격한 사고 사례에 관한 설문분석

목격한 사고 사례에 관한 설문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첫번째로는 목격한 사고의 주원인에 관한 내용이며 Table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안전사고의 주원인은 개인부주의에 있다고 나타났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작업장 자체 위험이 크다고 높은 비율로 응답한 군은 안전관계자로서 안전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에 의한 선택인 것으로 판단된다. 두번째로는 직접 목격한 사고를 중심으로 근로자의 과실여부 즉, 사고의 직접원인이 되는 불안정한행동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Table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근로자 과실 있음'에 대한 60%의 높은 응답으로부터 근로자 자신들이 그 위험성을 알고 있으며 안전한 작업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Table 3. 목격한 사고 사례에 관한 설문분석

	질문	응답	근로자	안전관계자	소장
목격한 사고에 관한 설문	안전사고 주원인	개인부주의	16	14	6
		안전관리부족	12	6	3
		작업장 자체위험	7	11	2
	근로자 과실여부	과실 있음	21	22	7
		과실 없음	9	5	1

3. 2. 2 안전관련 규정 미 준수 시 ‘과태료 부과제도’에 관한 설문분석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과태료부과 제도’는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제도이다.⁶⁾

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재해예방의 기여도를 파악하고 제도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 인지 알기 위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을 실시한 결과 Table 4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도의 시행여부에 대한 인지도는 안전관계자가 전체 응답자 중 96.7%, 현장소장 90.9%의 응답률로부터 사업주에게는 홍보 및 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는 55.8% 응답 비율로 직접적인 과태료부과 대상인 근로자의 인지도가 낮다는 것으로 제도의 시행여부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과태료 부과제도’가 직접적인 부과대상인 근로자들에게 인지도가 낮고 재해예방에 대한 기여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각각의 군에게 ‘과태료 부과제도’가 재해예방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관해 설문을 하였다. 설문 분석결과 제도 시행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안전관계자 군이 응답자 30명중 17명(56.6%)이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관리적 측면에는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근로자 중 13명(44.8%)이 ‘약간 그렇다’로 응답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러한 제도가 활성화 된다면 재해 예방을 위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결론을 유추해 낼 수 있다.

Table 4. 안전관련 규정 미 준수 시 ‘과태료 부과제도’에 관한 설문분석

	질문	응답	근로자	안전관계자	소장
과태료부과제도에 관한 설문	제도의 인지도	알고 있다	19	30	11
		알고 있지 않다	15	1	2
	재해예방 기여도	그렇다	8	17	3
		약간 그렇다	13	7	5
		그렇지 않다	8	6	4

3. 2. 3 ‘근로자 무과실 원칙’에 대한 산재처리 방식 관한 설문 분석

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과실보다는 사업주의 과실여부에 치중하여 재해를 처리 하고 있는 현행 산재처리 방식인 ‘근로자 무과실 원칙’에 대한 질문은 첫 번째 ‘근로자 무과실 원칙’의 상시 적용에 대한 타당성, 두 번째 작업장 종사자 전원의 책임 있는 역할의 필요성, 세번째 ‘사업주 과실 책임’⁷⁾에 의한 산재처리 방식의 문제점, 마지막으로 그

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근로자 과실 인정제’ 도입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설문 결과는 Table 5 와 같이 나타났다. 산재처리 방식으로 ‘근로자 무과실 원칙’ 상시 적용 타당성에 관해서 응답 비율로 분석한 결과, 근로자는 ‘타당 하다’ 와 ‘타당하지 않다’에 각각 50%의 같은 비율로 나타나고 안전관계자의 경우 ‘타당하지 않다’는 79.3%, 현장 소장의 경우는 62.5%로 나타났다. ‘근로자 무과실원칙’ 상시적용에 대한 ‘타당하지 않다’고 나타난 높은 응답 비율로 볼 때, 재해의 직접적인 피의자가 되는 근로자의 책임 있는 역할을 작업장 종사자 모두가 요구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 직접 설문을 통해 ‘필요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Table 5에 의하면 응답 근로자 35명 중 31명(88.5%)의 높은 비율로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적극적이고 합당한 역할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해발생시 근로자는 약자라는 개념으로 사업주의 책임만 강조했고 이런 방법이 결코 재해를 절감시키거나 재해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 재해 발생시 ‘사업주 과실 책임’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는 Table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응답자 비율로 볼 때 근로자 24명(77.4%)이 ‘문제 있다’로 응답했으며 안전관계자 25명(89.2%), 소장은 10명(76.9%)이 재해 발생시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가리고 사업주가 과실이 없는 경우 사법처리로 인한 기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로써 노동부에서 실시 하고자 하는 ‘근로자 과실 인정제’ 도입에 대한 설문을 실시 한 결과 응답자 비율로 비교해 볼 때 근로자의 경우 15명 (78.9%)으로 나타났고 안전관계자와 소장은 각각 100% 비율로 나타나는데 근로자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응답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도 도입에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Table 5. ‘근로자 무과실 원칙’에 대한 산재처리 방식 관한 설문 분석

	질문	응답	근로자	안전관계자	소장
‘근로자 무과실 원칙’에 관한 설문	상시적용의 타당성	타당하다	17	6	5
		타당치 않다	17	23	8
	책임 있는 역할의 필요성	필요함	31	31	13
		필요 없음	4	0	0
	산재처리 방식의 방식	문제 있음	24	25	10
		문제 없음	7	3	3
	과실 인정제 도입 필요성	필요함	15	25	9
		필요 없음	4	0	0

4. 결 론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제도들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 책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재해 감소 및 재해 예방활동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사업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역할에만 의존 할 수 없

도록 산업의 형태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종사자 전원의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 내고자 건설현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안전관계자 그리고 소장을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을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안전사고의 주 원인은 개인 부주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재해시 근로자 과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과태료 부과 제도'에 대해서는 안전관계자나 소장의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고 근로자는 55.8%로 높지 않은 비율로 나타났다. 재해예방의 기여도는 '약간 그렇다'에 44.8%의 근로자가 응답하여 낮지 않은 비율을 보여 재해예방 활동에 기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근로자 무과실 원칙'에 대해서는 상시 적용의 타당성, 재해예방을 위한 종사자 간의 역할강화, '사업주 사고 책임'인 산재처리 방식 등에 제도의 문제점이 많으며 '근로자 과실 인정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설문 및 면담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사업장의 안전보전은 종사자 전원의 책임 있는 역할이 요구 되고 역할 수행을 적극적인 형태로 유도하기 위해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과태료 부과 제도'를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노동부에서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근로자 과실 인정제'는 조기에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재해시 근로자 사업주의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사업주는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근로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으로 자긍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 의식 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사회적 안전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보호구협회, 월간 안전보호구, 2004. 7
2. 노동부,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 2004. 12
3. 산업안전공단, 2002년~2004년 건설재해사례
http://www.kosha.net/kosha/info/industry/healthdb1_01.jsp?sNodeId=1620&s
4. 전진만, 건설근로자의 산업안전 의식에 관한연구,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2002. 8
5. 강병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실태와 예방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산업기술대학원, 2001. 12
6. 산업안전공단, 안전보건, 2004. 2
7. 이태영, 산업재해로 인한 비보험비용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2000. 8